

지방세통계

구 분		내 용
승인번호		110007
승인일자		1986년 12월 16일
통계종류		보고통계
보고대상	지역	■ 전국
	범위	■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 현황
	보고단위	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
	보고대상 규모	■ 17개 시도, 226개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액
보고항목		■ 지방세 총괄, 세목별 부과징수, 시도·시군구별 징수실적, 지방세 체납액, 비과세·감면 현황, 지방세 물납·분납 현황 등
자료보고방법 및 작성방법		■ 행정집계
보고기간	기준시점	■ 매년 12월 31일 기준
	보고시기	■ 작성기준년도 익년 4월~7월
	보고주기	■ 1년
공표	공표시기	■ 작성기준년도 익년 10월
	공표주기	■ 1년
	공표방법	■ 간행물(지방세통계연감)
보고체계		■ 시·군·구→시·도→행정안전부
자료이용시 유의사항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본 통계는 지방세의 부과·징수실적을 연도별·세목별·지방자치단체별로 분석한 것임 (지방세기본법 제149조) ■ 지방세 부과·징수실적은 부과액과 징수액으로 대별한 후 지방자치단체별·세목별로 구분하였으며, 통계의 기준시점은 12월말(출납폐쇄기한) 결산액으로 하였음 ■ 본 통계에 수록된 지방세 및 국세의 통계는 공식적인 계수임
주요 용어해설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과세표준 : 세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, 수량 등으로 대부분 일정한 금액(소득금액, 재산가액 등)으로 적용하고 있지만, 면적, 건수, 배기량, 세대 등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■ 세율 :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일정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률세 : 취득세, 재산세, 소득분 지방소득세, 레저세, 지역자원시설세, 지방교육세 등 - 정액세 : 면허세, 자동차세, 담배소비세, 주민세(개인분, 사업소분) 등 ■ 비과세 : 세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공익, 정책, 과세기술상의 이유 등으로 과세대상에서 근본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것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,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, 천재 또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,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■ 감면 : 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국가정책 또는 납세의무자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세액의 일부를 경감하거나 전부를 면제하게 하는 것
주요 연혁		■ (1986년) 지방세통계 작성 승인(통계청)